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9 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주호영・이만희・김민전

김위상 · 강대식 · 김승수

권영진 • 우재준 • 김상훈

정희용 • 이상휘 • 이인선

김석기 · 조지연 · 김정재

임종득 • 윤재옥 • 김기웅

최은석 • 구자근 • 박형수

김형동 • 임이자 • 이달희

강명구 · 송언석 · 유영하

박홍근 • 박균택 • 백혜련

김태년 의원(31인)

제안이유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·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,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 전·건설하는 첫 사례인바,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(안 제7조제4항 신설,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)
 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 성 등을 위한 사업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 - 2)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 - 3)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.
- 나.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(안 제8조의2 신설)
 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 - 2)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

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 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.

- 다.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(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)
 - 1)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,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 - 2)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.
 - 3)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, 공작물,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·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"를 "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·상업시설·첨단산업시설·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"로 한다.

제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「국방 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공항시설

- 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 의 시행을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1.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
- 2. 제14조제4호의 법인에 출자한 자
- 제9조의2(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「공항시설법」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(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・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세목(細目)을 포함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 본계획을 수립·고시하는 경우에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
- 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(裁決)의 신청은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- 제15조제4항 본문 중 "제3항에 따라"를 "개발사업시행자가"로 한다.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9조제2항 중 "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"를 "국가 또는 종전부지 지방 자치단체"로, "종전부지 주변지역 내"를 "종전부지 및 종전부지 주변 지역 내"로 한다.
- 제20조제2항 중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 항 중 "제2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-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9조의2(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)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 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 - 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

재정법」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이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2항·제3항 및 제55조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있다.

- 제29조의3(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)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2항 및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(공공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)의 조성·공급 및 임대주택(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)의 건설·공급을 하지 아니한다.
 -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을 면제한다.
 -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.
- 제29조의4(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)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제1항제3호 및 「군 공항 이

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건축물, 공작물,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종전부지 개발사업"이란 <u>종</u>	5
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・상	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
업 시설을 설치하고 「산업입	<u>· 상업시설 · 첨단산업시설 ·</u>
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	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
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	
<u>으로</u>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	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	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
사업의 시행 등) ①・② (생	사업의 시행 등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	3
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	
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	
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	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, 이	
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	
지원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	
<u>설></u>	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
	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「곳곳주택 특별번」 제2

<신 설>

<신 설>

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「국방・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의2(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공 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 항개발사업 일부의 시행을 제8 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제1 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항개발사 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 전에 국토교 <u><신</u>설>

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1.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 인
- 2. 제14조제4호의 법인에 출자 한 자

제9조의2(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 조제3항에 따라 「공항시설 법」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 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 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(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・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세목(細目) 을 포함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·고시하는 경 우에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

제15조(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 제15조(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 립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 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 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보상에 관한 법률 _ 제20조제1 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 으로 본다.

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(裁決)의 신청 은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제3 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
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 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 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 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

- 제19조(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 지원 등) ① (생 략)
 - ② <u>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</u>는 종 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<u>종</u> 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정부의 재정 지원) ① (생략)
 - ②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 조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

J	는 제1항 후단 및 제	4항을	준용
(한다. 다만, 대통령령	형으로	정하
_	는 경미한 사항을 변		
	우에는 그러하지 아		
- 제1	19조(기반시설의 설.	 치 및	- 우선
7	지원 등) ① (현행과	· 같음)	
(② 국가 또는 종전부	부지 지	방자
	 치단체		
-			- 종
7	전부지 및 종전부지] 주변	_ 지역
	내		
-	 		
제2	20조(정부의 재정 지	l원) ①) (현
č	행과 같음)		
2)		
-			
-			
-			
-			
-			
-			
-			
-			
-		<u>지</u>	원한
Ţ	<u>다</u> .		
(③ 제1항 및 제2항-		

인 범위·규모·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제29조의2(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)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 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 법 . 제11조제2항 · 제3항 및 제 55조의2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 및 재정위기단체 지 정 등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. 제29조의3(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)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12조제2항 관련 규 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
②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2항 및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(공공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)의 조성·공급 및 임대주택(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)의 건설·공급을하지 아니한다.

③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제시 및 복구 의무 이행을 면제한다.

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기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한다.

제29조의4(양여재산의 평가에 관 한 특례)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「국유재

<신 설>

산법」 제55조제1항제3호 및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 건축물, 공작물,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한다.